제3차(2022~2024)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

2021. 12.

중소벤처기업부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1. 추진근거 ····· 1
2. 추진경과 ····· 1
3.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····· 2

Ⅱ. 그간의 성과 및 한계 ····· 13

1. 주요 성과 ····· 13
2. 보완 필요사항 ····· 19

Ⅲ. 3차 지원계획 기본방향 ····· 21

Ⅳ. 핵심 정책과제 ····· 22

1.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 ····· 22
2.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·공정성·전문성 확보 ····· 28
3.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·육성 ····· 32
4.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····· 38

Ⅴ. 추진일정 ····· 44

Ⅰ. 추진배경

1 추진근거

□ 「**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**」(이하 기술보호법) **제5조**

○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「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」(이하 지원계획)을 3년 마다 수립·시행

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

-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-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
-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
-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

2 추진경과

□ '14.5월 **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**을 계기로 그간 1차, 2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○ **(1차, '16~'18년)**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**지원 중심 정책 추진**

*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, 기술유출 피해 사후구제 강화, 기술보호분위기 확산 등

- **기술유출 사전예방** 및 **사후구제 지원**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 감소('15, 3.3% → '18, 1.9%)

○ **(2차, '19~'21년)** 대·중소기업 상생과 공존을 위한 **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범부처 기술보호 협력방안** 및 정책 추진

* 기술보호 지원인프라 기반 확대, 기술분쟁 대응체계 강화, 기술보호 문화 정착 등

-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**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**('18.2월)을 추진하고,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**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***('20.4월) 수립·시행

* 중소기업 신탁기술 이전·거래 추진, 기술침해 행정조사 활성화,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

3 중소기업기술 보호 현황

3-1 중소기업기술 침해 현황

□ 중소기업의 약 1.7%가 기술유출 · 탈취를 경험

○ **(침해 현황)** 최근 3년간('17~'19) 기술유출·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.7%이며, **평균 피해금액은 5.8억원**에 달함

< 최근 3년간('17~'19) 중소기업 기술유출·탈취 현황 >

(단위 : 개사, %, 건,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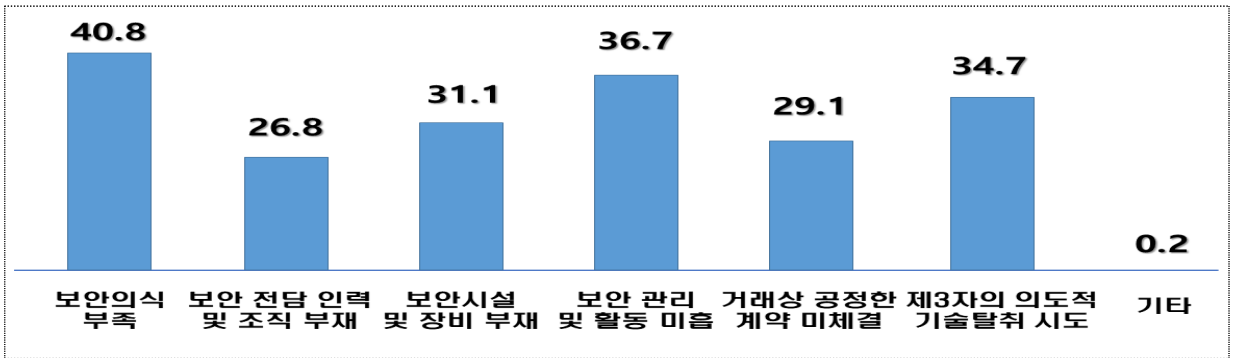
구분	조사기업 (a)	피해기업수 (b)	피해 경험률 (b÷a×100)	총 건수 (c)	총 피해금액 (d)	평균 피해금액 (d÷c)
중소기업	2,095	35	1.7	50	290	5.8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○ **(침해 원인)** 기술유출·탈취 사고는 **보안의식 부족, 보안관리·활동 미흡**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

< 기술자료 유출·탈취 사고 발생 이유 >

(단위 : %)

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- 중소기업은 기술유출·탈취 방지를 위해 자체적 보안 노력(37.1%)과 함께 **강력한 법제도 마련** 및 **처벌**(22.7%)이 **필요**하다고 생각

* 기술유출·탈취 방지를 위해 시급한 부분
: ①자체적인 보안 노력(37.1%) > ②강력한 법제도 마련 및 처벌(22.7%) > ③안전한 기술거래 계약 체결(15.1%) > ④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마련(12.7%)

< 기술자료 유출·탈취 피해경로 >

(단위 : %)

내부 직원	해킹 등 네트워크 외부침입	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및 제3자에 유용	핵심인력 탈취	특허,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침해	모름/ 무응답	합계
45.7	17.1	17.1	11.4	5.7	2.9	100.0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○ **(사후조치)** 기술유출·탈취 이후 약 **88.9%**가 입증자료 부족, 시간·법적비용 부담 등으로 **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**다고 응답

* 기술유출·탈취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
: ①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(50.0%) > ②시간과 법적비용 부담(38.9%) > ③거래축소/단절 우려, 피해가 경미하여 조치 필요성 미인지(각 5.6%)

-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보안정책, 조직, 교육 등 관리적 보안에, 외부적으로 **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**에 집중

< 기술유출·탈취 이후 내 · 외부적 조치 >

내부적 조치	①보안정책, 절차, 규정, 조직, 교육 등 관리적 보안 강화(51.4%) ②PC, 네트워크, 서버, 접근제어 등 기술적 보안 강화(45.7%) ③출입통제, 보안SW, 장비설치 등 물리적 보안 강화(22.9%) ④특허취득, 기술임치 등 지식재산권 획득 노력(17.1%) ⑤별도의 조치가 없었음(25.7%)
외부적 조치	①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(31.4%) ②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노력(25.7%) ③행정기관(중기부, 공정위, 특허청 등) 행정구제 신청(11.4%) ④수사기관에 수사 의뢰(5.7%) ⑤별도의 조치가 없었음(42.9%)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○ **(침해대응 비용)** 기술침해로 인한 침해조사, 법률자문, 경고장 발송, 소송 등 대응비용은 평균 6,440만원이며,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은 1억1,270만원, 중소기업은 2,910만원

< 피해기업 기술분쟁 평균 대응비용 >

(단위: 백만원, 괄호 안은 건수)

기업유형별	벤처/이노(37)	중소기업(41)	중견기업(13)	대기업(5)	총계(96)
대응비용	112.7	29.1	5.6	150.0	64.4
권리유형별	**특허(37)**	**실용신안(5)**	**상표(31)**	**디자인(23)**	
대응비용	128.0	17.0	36.5	10.0	

* 출처: 2019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(한국지식재산연구원)

○ **(소송비용)** 기술침해 분쟁의 평균 소송비용은 5,860만원이며,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/이노비즈기업은 1억9,700만원, 중소기업은 1,36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됨

< 피해기업 기술분쟁 평균 소송비용 >

(단위: 백만원, 괄호 안은 건수)

기업유형별	벤처/이노(17)	중소기업(22)	중견기업(6)	대기업(5)	총계(50)
소송비용	109.7	13.6	2.6	150.0	58.6
권리유형별	**특허(27)**	**실용신안(3)**	**상표(13)**	**디자인(7)**	
소송비용	99.3	25.0	9.8	6.4	

* 출처: 2019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(한국지식재산연구원)

□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0.7%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

○ **(부당 요구)**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0.7%로 전년('18년) 대비 0.2%p 감소

○ **(기술유용)**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·유용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0.5%로 전년('18년) 대비 0.4%p 감소

< 하도급거래 중 기술자료 요구·유용 실태 >

구분	2019년(a)	2018년(b)	비교(a-b)
기술자료 요구	0.7%	0.9%	⊿0.2%p
기술자료 유용	0.5%	0.9%	⊿0.2%p

* 출처 :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(공정위)

3-2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

□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

○ (역량수준)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('20년)은 48.6점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대기업 대비 상대지수는 70.1% 수준

< 기술보호 역량점수 및 수준) >

(단위 : 점, %, %p)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대기업 比 중소기업 상대지수	전년比 상대지수 증감
2020	48.6	64.3	69.4	70.1%	3.9%p ▲
2019	45.9	66.8	69.3	66.2%	3.2%p ▲
2018	44.3	60.9	70.3	63.0%	12.5%p 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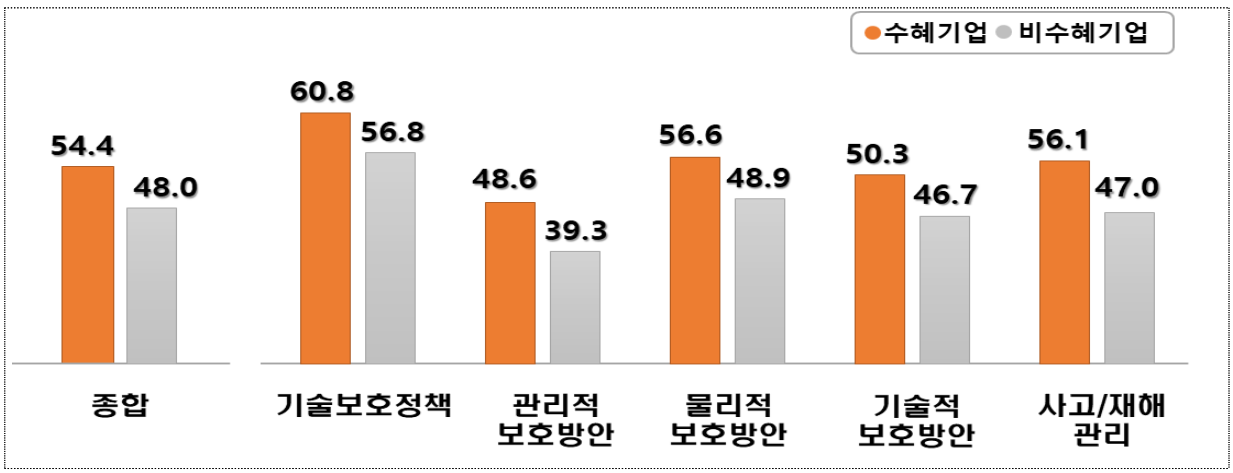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* 기술보호 역량점수 배점 : 기술보호 정책(30점), 관리적 보호(27.5점), 물리적 보호(15점), 기술적 보호(20점), 사고/재해 관리(7.5점)

- 기술보호 수준별(5단계) 분포를 보면, 취약·위험기업은 43.9%로 우수·양호기업(22.3%) 대비 약 2배 정도 많은 수준

* 기술보호 수준 분포 : ①우수 3.9% > ②양호 18.4% > ③보통 33.7% > ④취약 36.4% > ⑤위험 7.5%

-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의 역량점수는 54.4점으로 비수혜기업(48.0점) 대비 13.3%(6.4점) 높게 나타남

< 기술보호 역량점수 및 수준) >

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○ **(업종·규모별)**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클수록 기술보호 수준이 높고, 특히 **지식서비스, 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 업종이 他 업종 대비 우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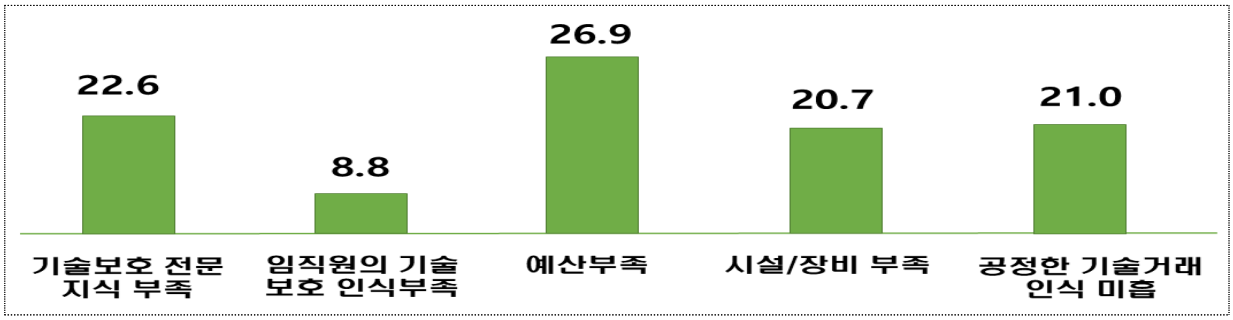
* 매출액 규모별 수준 : ①100억원 이상 51.1점 > ②50~100억원 미만 48.3점 > ③10~50억원 미만 47.6점 > ④10억원 미만 47.3점

** 업종별 수준 : ①지식서비스 52.0점 > ②정보·통신 51.3점 > ③전기·전자 51.0점 > ④바이오·의료 48.5점 > ⑤화학·섬유 47.6점 > ⑥기계·소재 47.2점 등

□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 시 가장 큰 애로는 예산부족 · 전문성

○ **(애로사항)**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**예산부족**(26.9%)이 가장 많고, **기술보호 전문지식 부족**(22.6%) 順

< 기술보호 추진 애로사항 >



* 출처 :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

○ **(정책수요)**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는 **보안시스템 구축**(37.5%), **기술보호 인식제고**(18.3%), **컨설팅**(13.3%) 順

* 기술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분야

: ①보안시스템·장비 구축 37.5% > ②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 18.3% > ③기술보호 컨설팅 13.6% > ④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13.3% > ⑤기술자료 임치 8.9% 등

□ 비대면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보안인식 취약

○ 중소기업의 25.9%가 비대면 근무에 따른 보안위험 정도가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46.1%가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

- 대부분 업무 변화의 **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** 시스템, 인력 등 **보안 인프라 부족**으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

* 업무환경 변화가 없는 이유 : ①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(65.8%) > ②원격근무 지원시스템 부재(12.9%) > ③관련 기술적 내용 미인지 및 전담인력 부재(11.3%) 등

□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

○ 수요자가 **기술탈취로 필요기술을 습득하는 관행**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**기술거래* 또는 M&A 성과는 저조**

* 중소기업의 국내 기술이전을 실시한 업체는 전체 기업체의 0.34%, 평균 이전건수 2.8건으로 극히 소수의 기업체만 기술이전 실시

< 중소기업 기술이전 현황 >

(단위: 개, 건수)

구분 (조사년도)	조사대상 기업체수	국내		해외	
		기술이전 실시 기업체수(비율)	평균 이전건수	기술이전 실시 기업체수(비율)	평균 이전건수
2019	62,092	213 (0.34%)	2.8	91 (0.14%)	1.4
2018	60,347	247 (0.40%)	1.3	34 (0.06%)	1.0

출처: 2019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(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중앙회)

○ 기술탈취는 **중소기업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**하고 결국 협업하고 있는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저성장 문제라는 악순환을 유발

3-3 중소기업기술 보호 정책 환경

□ 부처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 현황

○ **중기부, 공정위, 특허청 등이 각 부처 소관 법률**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**차별화된 정책·제도 시행 중**

< 부처 간 업무영역 비교 >

구분	거래관계 관련성		기술보호 지원사업		지식재산(IP) : 창출-활용-보호					
	하도급	수·위탁	국내	해외	영업비밀	아이디어	특허	디자인	상표	기술자료
중기부		■	■							■
공정위	■									■
특허청				■	■	■	■	■	■	

※ 막대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 영역

- **(중기부)**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**비대칭 규제***, 침해 상담·소송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 **지원사업 운영, 부처 간 협업 주관**

*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단속(상생협력법),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(기술보호법)

- **(공정위)** 기술의 부당이용, 인력의 부당 유인·채용 등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**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행위**를 적발·제재

- **(특허청)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 등) 전반**에 대한 법·제도 운영,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등

- **(산업부) 산업기술** 및 **국가핵심기술 보호**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제도 및 핵심기술분야 지정

○ **경찰** 및 **검찰**은 후속 **형사적 제재**를 담당하며, 검찰 수사사건의 중기부 조정 연계를 통해 수사결과 일부를 중기부와 공유

□ 국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연혁

○ '14.11월 「**중소기업기술보호법**」 **시행**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도약의 계기

<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시기 구분 >

시기	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주요 정책
준비기: ~'04	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정책과 함께 취급
성장기: '05~'14	기술자료 임치제도, 상담센터 등 선택적 지원제도 마련
도약기: '15~'16	기술분쟁조정제도 신설 등 분쟁해결 프로세스 마련 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본격적 시행(2014.5.28. 제정)
전환기: '17~	① 행정조사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비대칭 규제제도 강화 ② 중소기업기술 분쟁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마련 ③ 공정한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

□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특징

○ **지식재산권 보호 강화**의 목적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**정당한 대가**를 지불하게 하여 **기술개발을 활성화**하는 등 기업 **기술혁신** 촉진

○ **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**의 목적은 이에 더하여 **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** 등 **사회적 형평성을 고려**하는 것

□ 기술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기술보호 대책 수립

○ **'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**('18.2)'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기술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**「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」** 마련·시행('20.4)

* 기술유출·탈취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공정위,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 수립

<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('20.4)」 주요내용 >

추진전략	추진과제
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	▸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(SOS) 제공 ▸중소기업 신탁기술 이전·거래 활성화 ▸국가 R&D성과물과 창업·벤처기업 아이디어 보호
기술침해사건의 신속한 대응	▸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신고요건 및 절차 완화 ▸기술침해 사건처리 부처간 협업 강화
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	▸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▸지식재산 침해범죄 수사 강화 ▸기술침해 피해기업 소송지원

○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**'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**(2017~2021)'을 기반으로 매년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대책 시행·점검 중

* 5대 전략 중 <2>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– 중소기업의 IP·기술 보호 강화

<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과제(2019~2021) >

연도	주요 과제
2019~2020	▸중소기업의 영업비밀·기술 보호 강화 ▸기술침해 피해입증 부담 완화 및 침해행위 처벌 강화 ▸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·조사 강화 ▸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기술침해·탈취 사건 신속 해결
2021	▸국내 지식재산보호 활동 강화 방안 마련 ▸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 및 기술혁신 기반 조성 ▸중소기업의 기술·영업비밀, 산업기술 보호 강화 ▸공조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 전문성 강화

□ 정부 중심의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제시

○ **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**으로 **디지털화**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부처 중심의 **데이터 보호정책 추진**

* (해외) 미국,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보호 법제와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 수립

<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련 지식재산 동향(지재위) >

구분	추진정책
기획재정부 ('20.7)	▸「한국판 뉴딜」에 따른 10대 대표과제 中 '데이터 댐' - 빅데이터 플랫폼·센터 확대 구축,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,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, 인공지능 융합 선도사업
지식재산위원회 ('20.4)	▸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선정(5개) - 데이터 활용 촉진 플랫폼 고도화, 한국형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, 저작권 제한 규정,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법 제정, 빅데이터 부정취득 사용 공개행위 제한
문화체육관광부 ('20.7)	▸저작권법 개정안 내 저작재산권 면책규정 도입 -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규정
특허청 ('20.3)	▸특허 빅데이터 활용 촉진 서비스 확대 - 차세대 특허넷 개통('20.3),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('20.6),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전략 추진

□ 사이버 침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안정 정책 마련

○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, **원격근무 시스템 등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이 유행** 추세

* 국내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2.0%로 전년대비 0.8% 감소했으나, 랜섬웨어(51.4%→59.8%), 악성코드(39.5%→42.7%)로 인한 피해는 증가 ('20 정보보호 실태조사, KISA)

○ 정부는 사이버 침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**「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」**을 발표('21.8), 세계 주요국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안정 정책 마련 중

(미국) 산업계에 랜섬웨어 대응 강화 촉구 및 방지대책 발표
-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 분야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, 미 행정부에서 랜섬웨어 방지대책 발표('21.7)

(EU) 사이버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미래 보안 환경 구축
- 디지털 기술·인프라 의존도 증가 및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략(EU Security Union Strategy for 2020~2025) 발표('20.7)

(일본) 언텍트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"IoT, 5G 보안 종합대책 2020" 발표('20.7)

(중국)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장 기반의 데이터 사용 촉진
-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데이터 개발 및 사용 촉진을 위해 보안법(Data Security Law) 초안 발표('20.7)

참고 1 부처별 기술보호지원 정책 및 제도현황

구분	중기부	특허청	산업부	공정위	검·경찰
사전 예방	**[법제도]** · 기술보호법 · 상생법 · 中企 기술보호 실태조사	**[법제도]** · 특허법, 부경법 · 직무보상제도 등	**[법제도]** · 산업기술보호법 · 산업기술보안 실태조사	**[법제도]** · 하도급법 · 공정거래법 · 서면실태조사	-
	[지원사업] · 전문가 보안·법률자문 · 기술지킴서비스 · 기술유출방지시스템 · 기술임치, 임치활용 · 해외기술보호지원	**[지원사업]** · 소송비용지원 · 지식재산보호 상담 · 비밀보호관리시스템 · IP-DESK,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	-	-	-
	[인식개선] · 기술보호 컨퍼런스 · 교육·설명회/홍보	**[인식개선]** · 홍보/ 교육	**[인식개선]** · 산업기술보호주간	**[인식개선]** · 홍보/ 교육	**[인식개선]** · 홍보/ 교육
민원 신고	**[접수창구]** ·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 · 국민신문고 · 언론보도	**[접수창구]** · 산업재산침해,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· 영업비밀보호센터 · 국민신문고	**[접수창구]** ·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	**[접수창구]** ·지방사무소 및 본부 (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대구) · 국민신문고	**[접수창구]** ·인지/신고수사
사후 구제	**[구제범위]** · **중소기업 기술침해**	**[구제범위]** · **특허,영업비밀, 아이디어 탈취**	**[구제범위]** · **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 침해**	**[구제범위]** · **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** · **공정거래법상 기술의 부당이용, 인력의 부당 유인·채용 등**	**[구제범위]** · **법률 위반 (배임 등)**
	[현장상담· 자문] · 기술보호지원반 (단기) · 법무지원단 (중장기) (상담·자문→ 모니터링)	**[현장상담· 자문]** · 영업비밀 침해 피해 상담 (영업비밀보호센터)	-	-	-
	[분쟁조정] ·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(조정회의→종료)	**[분쟁조정]** ·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(조정회의→종료)	**[분쟁조정]** ·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(조정회의→종료)	**[분쟁조정]** · 공정거래조정원 (조정회의→조정불성립시 공정위 이첩)	-
	[시정조치] · 기술침해조사팀 (사실조사→시정권고, 공표)	**[시정조치]** · 부정경쟁조사단 (사실조사→시정권고) **[수사·단속]** · 특별사법경찰 (지식재산, 영업비밀 침해 고소·고발)	-	**[시정조치]** · 기술유용감시팀 (사실조사→시정권고, 명령, 공표, 과징금, 고발)	**[수사공소]** · 인지/신고에 따른 수사 및 송치

참고 2 기술자료 유용·영업비밀 침해 관련 제도 현황

구분		특허청	중소벤처기업부		공정위
		부정경쟁방지법 등	기술보호법	상생협력법(개정안)	하도급법
사전예방	지원사업 등	· 지식재산보호 상담 · 영업비밀원본증명	· 기술유출방지시스템 · 기술임치, 임치활용	· NDA 체결 의무화 ※ 미체결 時 과태료 (1000만원 이하)	· NDA 체결 의무화 ※ 미체결 時 과징금 (10억원 이하)
	인식개선	· 교육/홍보	· 교육/홍보	· 교육/홍보	· 교육/홍보
민원	접수창구	· 영업비밀보호센터 · 산업재산침해,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	·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	· 불공정거래 신고센터	· 지방사무소 및 본부 · 국민신문고
사후구제	구제범위	· **영업비밀 침해** ※ 아이디어 침해 등 관련 별도 제도 有	·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(≒**영업비밀 침해**)	· **기술자료 유용행위**	· **기술자료 유용행위**
	상담·자문	· 피해상담 등	· 기술보호지원반 · 법무지원단	· 법률상담지원	· 법률상담지원 (공정거래조정원)
	분쟁조정	·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	·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	· 수·위탁 분쟁조정협의회	· 공정거래조정원
	사실확인	특별사법경찰	① 신고→사실조사 ※ 조사거부 時 과태료 (1000만원 이하)	① 직권조사 (NDA, 기술자료유용) ② 분쟁조정신청 →사실조사 ※ 조사거부 時 과태료 (5000만원 이하)	신고사건 조사 직권인지사건 조사 ※분쟁조정신청시 → 조정원 조정 ※ 조사거부 時 과태료 (2억 이하)
	행정조치	-	· 시정권고, 공표 ※ 시정권고 미이행 時 추가제재 없음	· 시정권고(개선요구) 시정명령, 공표 · 공정위 조치요구 ※ 시정명령 미이행 時 징역 또는 벌금 (1년, 5천만원 이하)	· 시정조치·공표 · 시정명령 · 과징금 · 고발 ※ 벌금 (하도급대금 2배 이하)
민사	배상	징벌적 손배 (3배)	※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	징벌적 손배(3배)	징벌적 손배(3배)
	입증	민사 일반원칙		입증책임 완화 ※ 행위태양 제시의무	입증책임 완화 ※ 고의·과실 전환
조직	접수사건 처리	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	기술보호과 내 기술침해조사팀		기술유용감시팀

※ 중기부 기술보호법 및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를 구제하고, 중기부 상생협력법과 공정위 하도급법은 수탁기업·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.

Ⅱ. 그간의 성과 및 한계

1 주요성과

❖ ①중소기업에 불리한 **법·제도 개선,** ②상생의 **분쟁해결 프로세스** 실증, ③중소기업 **기술보호 역량 강화,** ④중소기업 **기술거래**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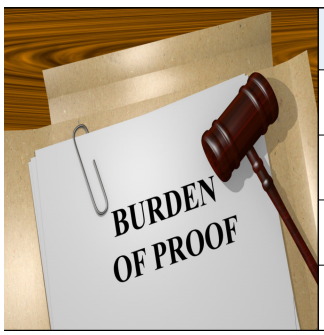
- (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제고) 44.3점('18) → 48.6점('20), 9.7%↑

1-1 법·제도 개선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

□ **소송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**

○ **(입증책임 완화) 특허권**에 대한 피해기업의 기술침해 **입증책임을 완화***하고 **수·위탁기업**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도 **확대적용**

*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실시행위 등을 제시하도록 의무화



입법 과제	추진현황
「특허법」	'19.7월 시행
「상생협력법」	'22.2월 시행
「부정경쟁방지법」	개정 추진 중
「산업기술보호법」	개정 추진 중

○ **(징벌적 손해배상)** 하도급거래에만 시행되던 **징벌적 손해배상**을 기술보호 **4개 법률로 확대 시행**하고 1개 법률(하도급법) 강화 추진



입법 과제	배율	추진현황
「특허법」	3배	'19.7월 시행
「부정경쟁방지법」	3배	'19.7월 시행
「산업기술보호법」	3배	'20.2월 시행
「상생협력법」	3배	'22.2월 시행
「하도급법」	3배→10배	개정 추진 중

○ **(손해액 산정기준 제시)** 특허권자·기술자료 보유자의 **생산능력 초과분**에 대해서도 **손해배상**을 받을 수 있도록 **「특허법」, 「상생협력법」 개정**

* '20.12월, 「특허법」 개정 시행, '22.2월 「상생협력법」 시행

□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·수사권 확대

○ **행정조사**를 **수·위탁거래**의 기술유용, **아이디어 탈취**까지 확대하고, **특허청 수사권**(특사경)도 상표권 **영업비밀·특허·디자인**까지 확대

< 기술침해행위 관련 수사·행정조사 확대 >

구분	확대 전		확대 후
행정조사	‣ **하도급 거래** 기술자료 유용행위 (공정위)	⇨	‣ **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조사·시정권고 신설('18.12 중기부, 기술보호법)** ‣ **수·위탁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직권조사 도입 ('22.2 중기부, 상생법)** ‣ **아이디어 탈취행위 조사 신설('18.7 특허청, 부경법)**
수사	‣ **상표권 침해** (특허청 특사경)		‣ **영업비밀, 특허, 디자인 침해까지 확대 ('19.3, 특허청, 사법경찰직무법)**

□ 중소기업 기술보호 장치 강화

○ **(비밀유지계약 의무화)** 대·중소기업 간 **수·위탁 관계**에서 기술자료 제공시 **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**하고 위반 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부과

* '22.2월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 개정 시행

○ **(인력유출 방지)** 기업 내 국가핵심기술 관련 **전문인력의 이직관리** 및 **비밀유지 계약 의무화**(산업기술보호법 개정, '20.2월)

□ 중소기업 분쟁비용 부담 해결

○ **(지식재산공제) 공제사업**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송비용 대출, 변리사 무료 컨설팅 제공('18.5월)

* 지원실적(건) : '21.9월까지 8,256건 가입(계약 총액763억원)

○ **(법무지원단 신설)** 지방중기청에 **기술보호지원반**을 편성하여 상담, 자문 등을 지원하고 **법무지원단**을 통해 1:1 심층 법률자문 및 조정대리 진행('18.5월~)

* (기술보호지원반) 지방청 책임관 13명 /('19) 30개사 → ('20) 169개사 → ('21.10) 157개사 지원
(법무지원단) 전문가 Pool 66명 /('19) 47개사 → ('20) 164개사 → ('21.10) 121개사 지원

○ **(자금 및 판로지원)** 기술탈취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**해외판로개척 우대*** 및 **긴급경영안정자금** 지원**

*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평가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('18.3월~)

** (지원)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 경영애로) 신청요건에 포함시켜 피해기업 지원('18.1월~)
(기간·금액) 연간 10억원 이내,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, 중진공 직접(신용)대출

1-2 상생의 분쟁해결 프로세스 마련

□ 분쟁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

○ **(상생조정위원회)** 기술침해·불공정 사건을 신속히 조정·중재하는 민·관 합동 위원회인 **상생조정위원회* 출범('19.6월)** 및 **법제화('20.6월)**

* (구성) 중기부 장관(위원장), 중기부 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대검·경찰청·특허청 차장, 민간전문가
(운영실적 10회) 31건의 기술탈취 사건이 안건으로 보고되어 9건 조정성립

○ **(중기부-검찰 연계 조정)** '19.11월부터 11개 지검을 대상으로 **검찰-중기부 연계 분쟁조정***을 시범실시하고, '20.11월부터 20개 지검·지청으로 확대(11건처리, 3건 성립)

* 검찰이 기술분쟁 관련 **형사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 전 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연계**하고 조정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사건기록을 중기부에 송부하여 조정을 개시하는 절차

< 중기부-검찰 연계 조정 참여 지검·지청 >

기 존(11개)	'20.11월 확 대(9개 추가)
서울중앙·동부·남부·북부, 수원, 수원지검 평택지청, 대전, 대구, 대구지검 서부지청, 부산, 광주	서울서부, 의정부, 인천, 춘천, 창원, 울산, 제주, 청주, 전주

○ **(특허청 기술침해판단 지원사업)** 특허청이 중기부 등 타부처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하여 **공동조사** 및 **기술판단** 지원

* '19.10월 이후, 기술자문은 총 11건(공정위 5건, 중기부 6건)('21.6월 말 기준)

□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해결 프로세스 실증

○ **(분쟁해결)** 행정조사·조정위원회·상생위 연계를 통해 범부처 협업 조정을 진행하는 **'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해결 프로세스'*** 실증

* 기술침해 **사실관계를 행정조사로 확인**하고 침해판단·손해액 산정 등으로 **합의를 도출**한 후, 조정절차로 **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** 부여하고 상생위를 통해 **제재 관련 범부처 협의** 진행

사례		**행정조사 통한 기술분쟁해결 첫 사례 (현대중공업-삼영기계 분쟁)** ○ 피스톤 제조기술 및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 도면을 현대중공업이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중기부에 신고('19.6) ○ 행정조사 후 4차례 상생조정위원회 안건 상정, '21.4월 조정 권고, 8차례 양자 미팅 주선 → 합의도출('21.9월) ○ **거래재개, 12건 분쟁종결** 등의 내용으로 합의문 작성 → 조정절차 통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('21.9.15)

○ **(동반성장)** 대기업·공공기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**기술보호 지원실적 평가지표를 신설**('18년)하고 평가실시

구 분	평가지표 내용	비 고
대기업	○ (실적 : 1~2점, 업종별 차등 배점) 기술임치실적,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실적, 교육·설명회 실적 등을 반영 ○ (감점 : 2점) **행정조사에 따른 시정권고, 공표 반영**	지표신설('18.12월) 평가('19~21') 실적('20년, 108개사)
공공기관	○ (실적 : 4점) 기술보호교육, 거래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실적, 지재권 무상이전실적, 기술임치실적 등 평가	지표신설('18.7월) 평가('18~'21) 실적('20년, 188개사)

1-3 선택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

□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행

○ **(유출방지시스템)** 중소기업의 **기술적·물리적 보안역량을 진단**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여건에 맞는 유출방지 **시스템 구축 지원**

* 지원실적 : ('18) 46건 → ('19) 55건 → ('20) 56건

○ **(지킴서비스)**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**보안관제서비스, 보안컨설팅** 및 **보안설비구축자금**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역량 제고

* '기술지킴서비스' 지원(누적): ('19년) 9,020개 → ('20년) 10,213개 → ('21.9월) 11,130개
** 산업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안컨설팅: ('19년) 56개 → ('20년) 30개 → ('21년) 30개
*** 설비자금(중소/중견) ('19년) 50개 → ('20년) 56개/2개 → ('21.9월) 43개/2개

○ **(기술임치 활성화)** 수수료 감면, 27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, 임치기관 추가지정으로 **기술임치 촉진('19년 1만건 돌파, 누적 7.5만건)**

<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실적>

구분	'08~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계
재단	34,652	9,216	9,522	9,378	9,704	72,472
기보	제도 시행 전			1,037	1,522	2,559
합계	34,652	9,216	9,522	10,415	11,226	75,031

○ **(스마트공장 특화) 스마트공장 기술보호가이드**를 마련하고, **보안컨설팅, 기술임치 등을 패키지**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제공

*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제공 현황 : ('19) 3건 → ('20) 1,513건 → ('21) 2,164건

□ 인력양성 및 교육 · 홍보

○ **(인력양성)** 석 · 박사급 **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* 및** 중소 · 중견기업 CEO, 보안책임자(CSO), 연구인력 등 **대상별 차별화**된 **기술보호 인식교육** 실시**

* 전일제 대학원과정: 아주대, 인하대, 중앙대, 단국대, 성신여대 등 5개대학 156명('19년~'21년, 누계)
** 방문/온라인: ('19년) 5,057/24,119명 → ('20년) 5,682/86,577명 → ('21.9월) 3,840/29.259명

○ **(비대면 교육)** 비대면 원격교육 확산 기류에 부응하여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기술보호 강의를 개설

* 교육실적 / 기관 : 9,049명 교육 수강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서울시, 경기도, 창업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, 국가평생교육진흥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

○ **(홍보)** 대기업 협력사 대상으로 중소기업 **기술보호 정책·제도를 홍보**하고, **기술보호 컨퍼런스**(매년)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보호 협력 우수사례 발표

* 코로나 발생 전('18년) 총 177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2만여명에 대해서 홍보

1-4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 확보

□ 중소기업의 안전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

○ **(기술자료 거래기록 보존지원)** 거래계약 前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기술 제안내용 및 제안시점 등의 **거래기록* 등록 온라인시스템** 도입** ('19)

* 제안서, 거래 요청의향서, 녹음파일,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관련 기록자료
**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(TTRS) 현황(기술보증기금) : ('19) 272건 → **('20) 367건**

○ **(중기신탁거래 도입)**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전·활용될 수 있도록 **신탁기술거래 및 지원체계*** **도입** ('19.3월)

* **(신탁기업)** 기술마케팅, 특허연차료(70%), 특허보호컨설팅(90%), 소송대리 지원 등
** **(인수기업)** 중기부 소관 R&D 과제 참여시 가점(2점, 20.1월), IP인수보증 지원 등

< 중소기업 기술신탁 및 기술이전 현황(건) >

구 분	'19년(제도도입)	'20년	`21.09월	합 계
중소기업 기술신탁	219건	317건	237건	773건
기술거래완료	40건	56건	39건	135건

□ 중소기업 특화 기술거래 ·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

○ **(법률개정)** 기술거래와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**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***('21.10월 시행)

< 법개정 주요내용 및 부처별 기술거래 소관법령 현황 >

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② **기술보증기금의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위탁·수행 관련 사항** 등 구체화

* 기보내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조직 신설 예정

부처	전담기관	소관법령
과기부	COMPA	과학기술기본법
	IITP	정보통신융합법
산업부	KIAT	기술이전법
특허청	발명진흥회	발명진흥법
중기부	기술보증기금 -	기술혁신촉진법

○ **(상생협력 기술거래)** 대기업은 **기술탐색 비용절감**, 중소기업은 **기술탈취 우려를 해소**할 수 있는 **대·중기 상생협력 기술거래시스템(2win-Bridge*)** 도입

* 중소기업 신탁기술과 대기업 기술수요를 연계하는 대·중소 상생협력 기술거래시스템 구축('20.4월)

<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최근 사례(총 4건) >

	수요기업(대기업)		상생협력 기술거래 성과사례
사례	D사	3호 ('21. 7월)	소재 경량화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**기술이전 및 공동R&D 협업** 예정
	L사	4호 ('21. 8월)	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**기술이전 및 공동R&D 협업** 예정

2 보완 필요사항

□ (법·제도) 여전한 피해기업 소송 부담 등

○ **기술탈취 분쟁**을 겪은 중소기업은 소송,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매출액 급감 등 **경영위기 발생**

*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분쟁 발생시, 평균 15개월의 분쟁기간 동안 피해기업 손실액은 약 13.2억원('20, 지식재산연구원)

** 법정다툼보다 즉효성 있는 기술분쟁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한 기업도 매출감소(36%), 폐업(13%)으로 피해가 발생('15~'20, 기술분쟁조정위)

○ 계속되는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**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** 및 **경영상 어려움 해소 방안**을 요청

- 행정조사를 민사소송과 연계하여 중**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**하고 R&D 등 **중기부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복지원** 필요

□ (분쟁해결) 법원 · 검찰 연계 조정제도 기반 미흡

○ **상생법 개정에 따라** 비밀유지계약 의무화, 입증책임 완화, 자료제출 명령, 손해배상액 산정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**법률상 근거 마련됨**

○ 변화된 법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·중소기업 대상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**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**

○ 실효성이 큰 법원사건 연계 조정* 및 중기부-검찰 연계 조정제도**를 MOU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**법률상 근거가 없어 정체 상황**

* 서울지역 4개 지방법원(중앙, 서부, 남부, 동부)과 '15~'16년 MOU를 체결후 총 5건 처리

** 상생조정위원회('19.9월, 2차, 대검찰청 차장 참석)에서 시범실시 합의 후 총 11건 처리

-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**법원·검찰 연계 조정제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** 및 **조정이유서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** 필요

□ (역량강화) 강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체계화

○ 중소기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생산, 영업, R&D 등에 집중하여, **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**

* 기술유출·탈취 사고는 보안의식 부족(40.8%), 보안관리·활동 미흡(36.7%)이 주된 원인으로 응답('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)

** 기술보호 투자금액 : ('18년) 23.7백만원 → ('19년) 23.4백원→ ('20년) 21.4백만원

○ 또한,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기업 및 **기술보호 표준모델이 부재**하여 기술보호 수준향상에 한계

* 국내외 보안 관련 인증(ISO/IEC 27001, ISMS-P 등)은 지표가 과다하고 취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은 도입이 어려운 실정

○ **우리나라**는 **세계적 기술경쟁력**이 있는 반도체, OLED, 이차전지, 조선 등 관련 중소기업을 보유 → 기술유출의 주요타겟

* '10년도 중반 이후 韓中간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의 경쟁 심화, 우리나라 세계1위 품목 감소('17년 75개→'19년 69개), 탈락 9개품목 중 4개가 중국에 추월당함('21.3, 무역협회)

- 기술 후발국의 M&A·핵심인력 영입·해킹 등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**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** 필요

□ (기술거래) 중소기업 미등록 기술의 거래 부진

○ 기술탈취 대상인 중소기업 기술자료*의 거래를 **신탁기술 거래시스템과 임치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****하고 있으나 부진

* 제조방법, 노하우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

** 기술거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대중소재단이 임치기술 DB를 제공하는 방식

○ 중소기업은 아이디어, R&D 연구결과, 제조메뉴얼 등을 기술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**미등록·비공지 상태인 임치기술의 활성화 필요**

Ⅲ. 3차 지원계획 기본방향

비전·목표

정당한 기술가치를 인정하는 공정한 혁신국가

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'1백사' · 중소기업 기술거래 '3천건' 달성

정책기조

중소기업 기술보호로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

법 · 제도 보완	⇆	분쟁해결 프로세스	⇆	중소기업 역량강화
비대칭 규제		범부처 협업체계		선택적 지원

⇩ ⇩ ⇩

중소기업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기술거래 활성화

추진과제

1 (법 · 제도)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

1. 기술분쟁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 해소
2.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거버넌스 정비

2 (분쟁해결)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 · 공정성 · 전문성 확보

1. 법원 · 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 조정 강화
2.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공정성 · 전문성 확보

3 (역량강화)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 · 육성

1. 인증 · 맞춤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
2.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 마련

4 (기술거래)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

1.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한 임치기관 기능확대
2. 경제성 · 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

Ⅵ. 핵심 정책과제

1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

1-1 기술분쟁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 해소

□ **기술침해 분쟁해결+(플러스) 프로그램 도입**(중기부)

○ **(회복지원)**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**신속한 분쟁 해결** 및 **경영 회복**을 지원하는 **분쟁해결+(플러스) 프로그램 도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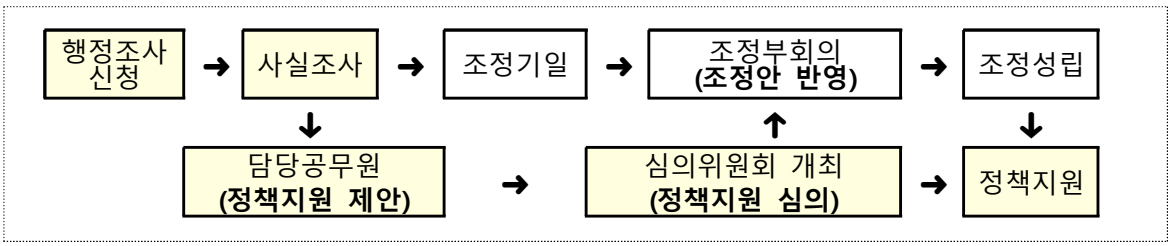
○ **(지원체계)**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**상생협력 의지** 및 **지원 필요성**을 고려, **심의위원회 상정·심의 후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연계**

- 구성 : 기술혁신정책관(長), 해당사업 소관과장, 기술보호과장 및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, 사건담당 공무원

- 기능 : 조정성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건담당공무원이 제시한 합의안 초안*을 심의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 여부를 결정

* (예시) 구매조건부R&D(중소기업 제안시 대기업의 R&D 분담금 또는 최대 지원 사업수 한도 예외 적용 등

< 분쟁해결 플러스 프로그램 >



○ **(지원내용)**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**R&D, 경영안정자금, 보증,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**을 **심의위원회를 거쳐* 추천**

* 사건 담당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지원 제안에 대해 소관과장 등이 적정성 심의

< 기술분쟁 신속해결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(안) >

맞춤형 정책 지원	기존 지원사항(가점부여 등)	비고
·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· 재도약자금 · 재기컨설팅 등	·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(대상편입) · 수출기반지원활용 사업(가점)	필요시 추가 신설

□ **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추진**(중기부)

○ **(정책보험)** 기술침해 피해 **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**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·안정성을 강화하는 **정책보험 도입 검토**

* (보험 목적물) 중소기업 보유의 특허권, 영업비밀, 기술자료 등
(보장내용) 보장금액 내에서 포렌식, 기술가치 평가, 심판 및 변호인 선임 등 소요비용 보상
(법적근거)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 추진으로 제도 운영 근거 마련

< 정책보험 지원범위(안) >

구분	피소대응(기본)	소제기(특약)
내용	• 보험가입자의 담보물(기술, 권리)과 관련한 법률 대응 - 경고장 대응, 라이선스 협상, 침해소송 대응, 무효소송 등	• 보험가입자의 담보물(기술, 권리)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 대응 - 침해사실 조사, 경고장 발송, 라이선스 협상, 침해소송, 변호사 선임 등
보장금액	최대 5천만원	최대 5천만원

○ **(활성화) 중기부 R&D 지원사업 연계**(사업비-간접비 반영) 및 **상생협력기금** 출연 대기업-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 유도

□ **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**(중기부)

○ 기존 **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**의 **활용 확대** 및 **실효성 제고**를 통해 **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 추진**

* 부처 및 법원과 협의를 거쳐 「중소기업 기술보호법」,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을 검토·추진

-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**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***할 수 있는 **근거****를 마련**하여 **행정조사-손해배상소송 연계**를 강화(中企 기술보호법 개정)

* 현행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고, 중기부는 상대방 당사자(기술침해 기업)의 동의하에 제한된 행정조사 결과자료만 송부 가능

** **[유사입법] 법원**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**공정거래위의 사건기록**(사건관계인 심문조서, 속기록 등 재판상 증거자료 일체)의 **송부를 요청가능** (하도급법 제35조)

- **자료훼손·제출거부** 시 해당 사실에 대한 **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**하여 기술침해기업에게 **시정권고·시정명령** 발동

* 자료훼손·제출거부 시 제재가 과태료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해 대기업 등은 행정조사에 비협조적

사례 중소기업과 대형제약사간의 보톡스 분쟁사건에서 중기부 행정조사를 거부
→ 대형제약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후 조사중단 결정('20.3월)

□ **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구축**(중기부)

○ **(민원인 편의제고) 울타리시스템**을 **"보이는 ARS*"** 및 **"원스톱 웹페이지**"** 서비스에 연계하여 **사업신청·침해신고 편의성 제고**(~'23)

* 상담신고센터 통화 시 스마트폰을 통해 범부처 기술보호 사업이 팝업되어 안내
** 범부처 기술보호 사업과 지원사업별 홈페이지 링크를 한 개의 웹페이지에서 안내

현장 목소리	D社 대표 : "우리의 피해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사업·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기 힘들고,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." ('21.4월, 기술분쟁 기업 현장방문 시)

○ **(기술보호 코칭)** 상담센터에 범부처 기술보호 사업과 관련법에 대한 **전문 상근인력을 배치**하여, 피해상황에 맞춘 지원사업을 연계(~'24)

* 민원인이 작성한 1개의 신고서를 통해 기술보호 코치가 피해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 (예시: 신고서 접수·검토 → 지원반 초동상담 → 법무지원단 → 조정중재 등)

○ **(DB구축)**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해 **처리경과 모니터링 DB구축**

* 구축내용 : 접수경로, 신고대상, 피해유형, 피해내용, 사업연계, 처리경과, 결과 등

□ **법무지원단 전문성 제고 및 홍보**(중기부)

○ **(전문성 제고) 법무지원단** 참여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**자격심사를 강화**하고 워크샵, 정책설명, 직무교육 등 정기적 실시

* (현행) 변협·변리사회 추천에 의한 풀 등록 → (개선) 조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풀 등록

○ **(제도 홍보) 법무지원단 참여 전문위원**의 동의를 얻어 **프로필, 우수 사건처리 사례, 전문영역** 등을 사업설명 **책자형태로 배포**

* 중소기업 기술보호 성과공유회, 기술보호지원반 워크숍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

□ **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 신속 구제**(중기부, 특허청)

○ **(수사연계)** 중기부 **기술보호통합상담·신고센터**로 접수된 지재권 등 침해 사건을 특허청 **특별사법경찰 수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연계**('22~)

○ **(동시지원)** 필요시 **신속한 피해구제**를 위해 **중기부 법무지원단, 전문가 현장자문 등 지원 병행**

1-2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거버넌스 정비

□ 상생협력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역량 확보(중기부)

○ **(조사체계 구축)** 상생협력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 **하위법령 제·개정** 및 **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**으로 업무수행 체계 구축

○ **(조사인력 확충)**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(직권, 신고), NDA 이행여부 감시 업무 등이 확대*됨에 따라 **조사인력 보강****

* (이전) 기술침해 행정조사 → (확대) 기술침해 행정조사, 기술자료 유용행위
** 기술침해 조사팀 : ('21) 1개 조사반(4명) → ('23) 2개 조사반(총 6명)

○ **(전문가 활용)**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**'기술침해자문단'*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법**·제도 정비

* 현직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, 전직 특허법원 판사, 전직 기술심리관 등 16인
*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분쟁조정위원회 통합운영('23~)

○ **(업무협의)**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규제도*가 법원 실무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**법원과 업무교류 정례화 추진**

*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, 징벌적 손해배상, 손해액의 인정, 자료제출명령 등

○ **(법체계)**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법체계 이원화에 따른 정책수요자 혼란방지를 위해 「**기술보호법**」과 「**상생협력법**」**의 통합 검토 등**

* 기술보호법 및 상생협력법 체계 및 업무 수행 거버넌스 관련 정책연구 추진('22~)

□ 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 의무화 기반 구축(중기부, 공정위)

◇ **비밀유지계약(Non-Disclosure Agreement)** : 업무 상 주고받아야 할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

○ **(이행·점검)** 수·위탁 및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NDA체결 여부에 대한 **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이행** 時 **과태료**(공정위는 과징금) **부과**

* 상생협력법·하도급법 개정으로 수·위탁·하도급 거래기업 간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도입('21.8월)

○ **(보급·확산) 표준 NDA 양식을 마련**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배포·사용을 권고하고 대기업·공공기관·중소기업 대상 **교육·홍보 추진**

○ **(체결지원)** 중소기업이 비밀유지계약 체결 時 **법률전문가 자문을 연계**하여 계약을 통해 법적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

□ **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 사각지대 해소**(중기부, 산업부, 공정위, 특허청, 수사기관)

○ **(민원창구 연계 강화)** 중기부 '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'를 **부처별 기술보호 접수창구의 유기적 연계 위한 허브***로 활성화

* 부처별 피해사건 접수창구 및 신청요건이 상이하여 중소기업이 피해극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 기반 마련

- 중소기업 사건이 **부처 소관 대상에서 제외**되면 **중기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인계**할 수 있도록 각 부처 **접수창구 상담 매뉴얼에 반영**

* **각 부처 상담인력(연2회)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**로 부처별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정립

- 또한 조사 및 조치(행정명령 및 형사고발)사건 등을 대상으로 조정·중재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**중기부 지원제도와 연계** 추진

< 중기부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를 통한 사건 인계 >

부처명	인계* 대상	기대 효과
경 찰	형사절차 진행중인 피해사건	피해보전 극대화 (조정중재, 민사 지원 등)
공정위	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사건	
국정원	국가핵심기술 적용 외 사건	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
특허청	I.P 외 중소기업기술 전반	
중기부	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상생법 적용 제외 사건	

* 인계절차: 타부처센터(접수) → 통합상담신고센터(인계) → 기술보호 지원반(초동대응) → 지원 사업연계(법무지원반, 포렌식, 조정중재 등) → **소관부처 연계·안내 등**

□ **기술분쟁 및 수·위탁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**(중기부, 특허청)

○ **(기술분쟁 실태조사)** 중소기업기술 분쟁현황 파악을 위해 **중기부-특허청**이 각각* 실시 중인 **실태조사를 통합**하는 방안 검토**

* (중기부)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, (특허청) 영업비밀 분쟁 실태조사
** 조사대상 권리 및 기업군 설정, 결과데이터 공유 등 부처간 협력방안 등

○ **(수·위탁 실태조사)**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(준수사항),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**상생협력법 개정내용**에 맞춰 **실태조사 설문내용 정비**

□ **'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' 전문성 강화**(중기부)

○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보호 업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**전담기관 발전방안** 필요

○ **(조직개편)** 피해구제 지원강화, 기술보호 역량제고를 위해 **대·중소협력재단 내 전담본부를 신설**하는 조직 개편 시행('22.상)

* 전담조직 신설 : (현행) 2개 부서 1개 팀, 24명 → (강화) 1본부(3개 부서), 30명
** (인력충원) 변호사, 변리사 충원 및 전담직원의 관련 기술거래사 등 자격 취득 지원

○ **(연구용역)** 행정조사, 정책보험, 중소기업 기술거래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*를 위해 **전담기관 이원화·전문기관 설립*** 관련 **정책연구** 진행(~'24)

*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설립된 대·중소재단 내 부서가 기술임치, 조정제도 운영 등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나 전문성 확보 및 인력운영 등에 한계 존재

□ **지방청(기술보호지원반)－인터넷진흥원(지역정보보호센터) 협업 추진**(중기부, 과기부)

○ **(내용)** 법률상담(기술보호지원반) 중심의 지역별 기술보호 지원을 **웹취약점 점검**(지역정보보호센터) 등을 포함한 **합동 피해구제**로 확대

-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(공동), 보안리빙랩 활용(과기부), 스마트공장 보안강화 (공동) 등 **기술보호-사이버보안 지원사업 연계**

※ 13개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지원반 + 10개 지역정보보호센터 연계

□ **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포상제 도입**(중기부)

○ **(포상제)**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근절 및 침해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**신고 포상제 도입**하고, **지방청 책임관을 통해 신고접수**('24)

<불공정 포상신고제도 현황>

구 분	대 상	포상규모	관련 근거
기술유용 (하도급)	기술유용 행위를 신고·제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	5억원 이내	하도급법 제22조
산업기술	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자	1억원 이내	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
산업재산/부정경쟁행위	부정경쟁행위 신고한 자	연 1천만원 이내	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
방위산업기술	방위산업기술 유출 신고자	2억원 이내	방산기술보호법 제17조

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제 관련 근거 마련

2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 · 공정성 · 전문성 확보

2-1 법원 · 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 조정 강화

□ **조정연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지원**(중기부, 법원, 검찰청)

○ **(법원 연계)**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**중기부-법원 간 조정연계 확대***('24~)

* 연계확대 : 現 4개 지법(서울중앙, 서울서부, 서울남부, 서울동부) → 10개 지법(인천지법, 수원지법, 대전지법, 대구지법, 부산지법, 광주지법)으로 확대 ('24~)

- 연계 법원별 **조정 담당 판사와의 사건 이관 협의**를 **분기별로 실시**하여 법원 연계 조정사건 처리 활성화

○ **(검찰 연계)** 기존 시범운영 중인 **검찰 연계 조정제도***를 **안착**시키고, 행정조사-경찰수사-검찰수사-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마련('24~)

* 20년부터 검찰연계 조정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(20개 지방검찰청 참여, 11건 접수·처리)

- **대검찰청·대전지검과 실무회의체를 구성**하고, 검찰사건 중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가능한 사건 연계 추진

○ **(지원사업 연계)** 조정연계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무지원단, 조정 대리인·소송비용 지원 등 **지원사업 연계 강화**

* 행정조사 신고시 법무지원단(법률지원 30시간)을 통해 신고서 보완, 검찰·법원 연계 사건의 경우 대리인(1000만원) 및 민·형사 소송비용(최대 2000만원) 지원

□ **조정이유서 작성 지원제도 도입**(중기부)

○ **(조정이유서) 조정 당사자, 관계기관 설득**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 지원

- **(초안작성지원) 상임조정위원·사무국 직원·사건담당 공무원**(행정조사 등 협조) 등이 조정이유서 **초안을 작성**토록하여 조정부에 제공

- **(사실조사강화)** 조정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**조정부의 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사실조사 요청**제도 등 도입

- **(작성비용지원)** 조정부장·조정위원 등이 조정이유서를 작성하는 경우 **중재결정문에 준하는 작성비용 지급**

○ **(증거 활용)** 당사자가 동의*할 경우 **조정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**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 추진('23)

* 비동의시에도 소송시 기술침해를 피해기업이 민사소송 서면 작성에 활용 가능

□ **조정·중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근성·편의성 제고**(중기부)

○ **(시스템 구축)** 제도·법령 안내, 상담, 조정신청, 절차별 안내·고지*, 자료전달,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**전자문서 처리 시스템** 구축

- 사건 당사자에 조정 진행절차 전자고지(신청서, 답변서, 보완서 등), 실시간 열람·출력(조정서류, 조정결과, 통계 등) 등 편의성 제공

<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시스템 >



□ **조정위원회 사무기구, 상임조정위원제도 등 신설로 분쟁해결 역할 강화**(중기부)

○ **(사무기구)** 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지원, 신규사건 접수, 행정조사와 **조정의 연계절차 관리, 조정이유서 작성 지원** 등을 위한 사무기구 신설

○ **(분과위원회)** 조정위원이 **기술침해판단, 제도개선**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주요경력을 토대로 분야별 분과위 구성·운영

* 분과위는 제도개선위원회, 기술침해심의위원회 등으로 역할에 따라 구성

○ **(상임조정위원제도)** 기술침해 판단의 일관성 및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분쟁조정위원회 **조정위원 일부를 상임위원**으로 위촉

○ **(근거마련)*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추진('22~)

2-2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

□ **조정위원회*에 행정조사 심의·의결 기능부여로 공정성·전문성 제고**(중기부)

*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제23조의 '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'를 의미

○ **(위원회 역할 확대)**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(침해여부·손해액 산정)를 **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**할 수 있도록 법·제도 개편

* 중소기업 기술침해 판단은 전문성 요구될 뿐만 아니라 판단오류에 따른 개별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, **당사자 승복·설득 위해 조정위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**

- **(제도연계)**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조정제도 간 유기적 연계위해 조정위가 중기부에 신고서, **행정조사 결과 송부 등을 요청**할 수 있도록 함

- **(심의·의결)** 기술침해 여부 등에 대한 **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**을 **시정조치**(권고·명령)의 **요건**으로 활용

○ **(근거마련)*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,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으로 조정위원회 역할 확대 등에 대한 **법적근거 마련** 추진('22~)

□ **기술침해·유출 신고 대응 체계 및 행정조사 전문성 강화**(중기부)

○ **(전문성 강화)** 부처 간 공동조사 및 연계 강화를 위해 **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전문인력**(변호사, 변리사, 기술거래사 등) **충원**

* 중기부-특허청 간 기술자문 필요 사건의 기술분석·공유, 기술경찰 수사 필요 사건 이관 등을 논의하는 "기술자문 실무협의체" 구성 합의('21.8.27, 제9차 상생조정위)

○ **(대응체계)**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, 대상기관·단체 등 **주체별 지침**(가이드) 마련·활용('22)

* 중소기업기술 보호범위 규정, 기술침해 판정 방식 및 비교, 기술침해 사례(판례) 등

○ **(사업연계)** 기술침해 사고 발생 시 **기술보호지원반 등과 연계**한 초동 대응으로 지역·분야별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지원 실시('22)

* 지방중기청, 지방경찰청, 국정원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침해 대응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'기술보호 이동 컨설팅' 적극 활용

□ **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술 판단 문제 해결**(중기부, 특허청)

○ **(기술침해 판단지원)** 중기부 등에 접수된 **복잡한 기술침해 사건의 기술판단***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사업을 활용('22)

* 비공지성, 비밀관리성, 신고인 기술과 피신고인 사용기술의 동일성 등

○ **(판단결과 활용)** 중기부 등이 요청한 기술 판단 요청사건에 대해 특허청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각 부처는 법 위반여부 및 행정조치 결정

중기부, 공정위	특허청	중기부 등
■ 필요시 특허청에 기술판단 요청	■ 비공지성, 비밀관리성, 사용기술의 동일성 등 판단 ■ 판단 결과 송부	■ 특허청 기술 판단을 참고하여 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

□ **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시효 도입**(중기부)

○ **(조사시효)** 상생협력법상 **조사 대상을 수·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**하는 규정* 신설('22)

*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계속 등을 원하여 기술자료 유용 신고를 미루는 경향을 있어 손해배상 시효만료 전에 신고하도록 환기할 필요

<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 입법현황 >

구 분	소관부처	현 행	개 정(안)
상생협력법	중기부	조사시효 규정 없음	(불 공 정) 3년 (기술유용) 7년
하도급법	공정위	(불 공 정) 3년 (기술유용) 7년	현행 규정 유지

○ **(근거마련)**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을 통해 조사시효 도입 추진('22~)

□ **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전자신고 도입**(중기부)

○ **(전자신고)**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의 **신고편의 및 신속처리 위해 전자문서로도 신고서 제출**할 수 있도록 개선('22)

* (현행) 서면으로만 신고 → (개정)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
** (법제처)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고서류 작성·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('19.3)

○ **(근거마련)*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 도입 추진('22~)

3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·육성

3-1 인증·맞춤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

□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 도입(중기부)

○ **(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모델 마련) 국내외 보안표준** 및 **인증제**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*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 개발

* 中企 기술보호 추진 애로사항('20년 조사, %) : 예산부족 26.9, 전문지식 부족 22.6

애로사항

◈ **국내외 보안관련 인증, 중소기업엔 '그림의 떡'**

■ 中企 정보보호 인력난, 인증준비 6개월, 컨설팅비용 1억, 개발자 모시기 '하늘의 별따기', 사후유지 부담



○ **(기술보호 인증제 도입·운영)**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*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**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**

* 인증기업 발굴(누적/개사) : ('22) 30개사 → ('23) 60개사 → ('24) 100개사

○ **(인증 특전 마련)** 기술보호인증기업에 R&D 가점 부여, 정책보험 등 **중기부 정책지원 혜택 부여** 통해 기술보호 투자 촉진

□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 확대 및 강화(중기부, 과기부)

○ **(컨설팅 확대)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**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**사전진단* 및 컨설팅** 지원 확대***

* (사전진단)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특성 고려, 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및 필요사항 발굴

** (컨설팅) 스마트공장에 맞는 기술보호컨설팅 및 임직원 대상 기술보호 10대 수칙 등 교육

*** (지원목표) ('21) 100건 → ('22) 150건 → ('23) 200건 → ('24) 250건

○ **(가이드 확산)**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**스마트공장 기술보호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* 배포**(과기부 협업)

* 스마트공장 기술보호가이드라인(중기부, 21.5월), 스마트공장 보안모델(과기부)

○ **(기술임치)** 스마트공장 구축 후 **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**을 임치기관에 **2년간 의무 임치**함으로써 도입기업의 안정성* 확보

* 공급기업이 폐업·파산 등을 한 경우, 도입기업이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사용 가능

○ **(시스템구축)**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,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**기술적,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**

* 지원분야: ①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, ②문서보안 솔루션, ③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④제어 보안 솔루션(설비 IOT, 제어네트워크 OT, IT 보안)

○ **(보안관제)** 스마트공장의 온·오프라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전문화된 **관제서비스(기술지킴)를 24시간×365일 상시 제공**

< 기술지킴서비스 >

보안 요구사항		기술지킴서비스(무료)
네트워크 보호	비인가 침입 차단	보안관제 서비스(24H)
	원격 제어 차단	
실시간 모니터링	보안 모니터링, 로그관리, 사고 탐지/대응/복구	
악성코드·랜섬웨어 탐지	악성코드/랜섬웨어 탐지 및 실시간 차단	악성코드탐지 서비스
		랜섬웨어탐지 서비스
내부 중요정보 유출 방지	파일첨부 기능 통제	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
	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	

□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(중기부)

○ **(수준진단)**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**기술보호 전문가를 투입, 취약점을 진단***하여 **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한 분야****를 도출

* 취약점 진단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 후 전문가 진단(1일, 무료)

** 분야 : 기술보호전략, 보안관리, 시스템(물리적, 기술적)관리, 사고/재해 관리

○ **(기업별 맞춤식 지원)**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**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**할 수 있도록 **맞춤형 전담지원 제공**

< 기업별 맞춤식 지원방안 >

현행(사업별 지원)	**개선**(기술보호 역량 점수별 지원)
전문가 현장자문, 법무지원단 기술임치,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	기술보호 정책(30점), 관리적 보호(27.5점) 물리적 보호(15점), 기술적 보호(20점) 사고 및 재해 관리(7.5점)

○ **(전담 및 사후관리)** 기업별 전담 전문가 배정을 통한 **밀착 지원, 2년간 사후관리**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지속 강화

DB구축	· 참여기업의 온라인 접수 및 기술보호 진행사항 모니터링 ·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 상향을 위한 지원 결과 공유
밀착지원	· 기술보호수준 사전·사후진단, 기업별 전담 전문가 POOL 구성 · 패키지 지원사업 기간 중 1:1 전담제 운영을 통한 밀착지원
사후관리	· 선도기업 지정 이후 2년간 기술보호역량 유지 지원 및 사업 연계

□ 대 · 중소기업 간 기술보호 상생협력 체계 구축(중기부)

○ **(네트워크 구축)** 대·공기관-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**'기술보호협의회' 구성 유도**('22~)

* 보안, 법률 분야 기술보호 전문가를 활용한 협력사 교육, 진단, 자문 등 지원

- 대·중소기업-유관기관-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보호 상생협력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

* (기존) "大→中企" 기술보호 지원 ➔ (개선) "大+中企" 공동 기술보호 활동

사례

◈ **방산 대·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(방위사업청)**

■ (지원대상) 대기업 1개사 + 중소·중견 협력기업 15개사 내외 컨소시엄
■ (지원내용) △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, △협력업체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, △기술보호 우수기업 벤치마킹, △대기업-협력업체 보안 워크숍 개최 등

○ **(공정거래조사)** 법률 개정, 대책 시행에 따른 기업의 체계적 이행 여부,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공정한 기술거래전반 **실태 파악**('22)

* 조사내용 : 기술자료 요구·침해행위, 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현황 및 사례, 기술보호 활동협력 현황 및 애로사항 등

○ **(인식개선)** 대·공공기관 임·직원 대상으로 공정한 기술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**설명회, 교육 실시**(매년 상반기)

* 대상 : 동반성장평가 대상 대기업 217개사, 공공기관 135개사 등 352개사

○ **(동반성장평가)** 대·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**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·개선**

* (대기업) 가점→실적지표 전환 및 배점확대 (2개업종 2점→3점, 9개 업종 1점→2점)
(공공기관, 배점기준 상향) 임직원 50% 이상 교육참여 → 60% 이상 교육참여 등

○ **(우수사례 공유)** 대·중견기업·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와 실천가이드 발간, 포상* 등을 통해 **자긍심 고취**

* (포상규모) 대표1, 국표1, 중기부장관 26개

3-2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 마련

□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(중기부)

[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]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기업으로 보안의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, 기술유출·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는 상태

○ **(지원대상) 소·부·장 등 중요 핵심기술** 및 **국가핵심기술**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

<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(25개 분야 187개 전략제품, '20~'22년) >

4차 산업혁명(16개)	중소기업 성장기반(9개)
① 인공지능, ② 빅데이터, ③ 서비스플랫폼, ④ IoT, ⑤ 시스템반도체, ⑥ 미래자동차, ⑦ 지능형로봇, ⑧ 스마트공장, ⑨ 스마트시티, ⑩ 바이오헬스, ⑪ 5G+, ⑫ 블록체인, ⑬ 드론, ⑭ 실감형컨텐츠, ⑮ 신재생에너지, ⑯ 배터리	① 광/LED, ② 정밀기계, ③ 유기화학, ④ 무기화학, ⑤ 금속, ⑥ 섬유/의류, ⑦ 일반기계, ⑧ 식품, ⑨ 조선

○ **(지원내용)**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**기술보호 규정** 마련, 기술자료 **임치, 보안 기술** 및 **시설·장비** 구축 등 **패키지 지원**

* (지원규모, 개사/누적) : ('21, 시범) 10사 → ('22) 35사

□ 중소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(특허청)

○ 기술의 특성에 따라 **특허·영업비밀을 활용**한 최적의 **기술보호전략**(IP믹스전략) **제공**

* ('21.10) IP믹스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→ ('22~) 산·학·연에 **IP믹스전략** 활용 지원

< IP믹스전략의 개념 >

【 모방(역설계)이 용이한 기술 】 제품의 형상·구조 등 쉽게 분석 또는 유추가능한 기술	→ **특허 출원**
【 모방(역설계)이 어려운 기술 】 공정조건(온도·압력)과 같이 알아내기 어렵고, 비밀관리가 유리한 기술	→ **특허+영업비밀** / → **영업비밀 관리**

○ 해외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**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확대**

* 특허 등 해외출원 지원 관련 예산(억원) : ('21) 189.6 → ('22) 194.6

○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낮은 대학·공공연 대상으로 **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***

*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지원대상 : ('21) 중소·중견기업 → ('22) 중소·중견기업, **대학·공공연**

□ **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국 특허분쟁 정보제공**(특허청)

○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(27개국), 지재권 법·제도 개정사항, **주요 국가의 특허분쟁* 모니터링** 및 **분석정보** 제공** 확대(특허청)

* ('21) 미국, 일본, 유럽, 중국 / 침해소송, 이의신청, 무효심판 → ('22,추가) 美 ITC 사건

** 일일분쟁속보, 주요 분쟁사건 정보, 월간 분쟁통계, IP Trend 연차보고서 등

○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**분쟁대응 지원사업·기관* 정보 원스톱 제공** 추진(특허청, '22~)

* 지식재산공제사업, 긴급경영안정자금, Intellectual Discovery社(국내 지식재산전문기업), 민간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

□ **국내 및 해외 분쟁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**(특허청)

○ **(국내)** 분쟁발생 기업에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**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**(특허청, '22~)

< 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 >

1단계			2단계	
지역지식재산센터 (전국 25개)	분쟁대응 초동상담	→	**지재권분쟁 대응센터**	중소·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

- 영세한 중소기업은 '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'에서 분쟁대응 기초상담, 심판·소송 등 지원

○ **(해외)** 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현지 **분쟁대응 서비스*를** 강화하고, **해외 IP-DESK 설치지역 확대****(특허청/KOTRA)

* 현지 로펌을 통한 분쟁대응 컨설팅, 현지 분쟁 전문로펌 정보,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

** ('21) **11개**(중국, 미국, 일본, 유럽(독일), 인도, 동남아(태국, 베트남, 인니, 필리핀), 러시아, 멕시코) → ('23~) **13개**(남미, 중동·아프리카 지역 담당 IP-DESK 추가)

□ **사이버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** 中企**맞춤형 보안기술 개발**(중기부)

○ **(보안솔루션)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**을 위한 보안솔루션 개발

- '기술지킴서비스'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저비용·인력형 보안솔루션을 개발·보급

* 기술지킴 활용기업 애로사항 조사('21년, 100개사) : 전문인력 부족, 시스템 복잡 등

○ **(관제시스템) 비용절감·필요충족을 동시에 달성**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**수요조사** 등을 통해 中企맞춤형 보안관제시스템 개발

- 수요기업 및 개발기업 공동참여 형태 과제기획 추진* 등 **보안기술 R&D 지원확대 병행**

* 보안 솔루션 활용 시 애로사항 수요조사,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다수 보안 솔루션의 고가·다기능 문제를 해소한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('22년~)

□ **중소기업 랜섬웨어 대응 역량 강화**(과기부)

○ **(데이터금고 구축)** 중소기업들의 **업무중단, 데이터 유실 예방** 강화를 위해 **데이터금고* 구축을 통한 백업 지원**

* 중소기업의 데이터 이중화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(또는 하드웨어) 기반 백업 지원

- 실시간 '데이터 백업'뿐만 아니라 '데이터 암호화', 랜섬웨어 사고시 '데이터 복구'까지 종합 지원

○ **(랜섬웨어 대응) 메일보안 SW, 백신, 탐지·차단SW** 등 **'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'**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**(클라우드 기반 보안)** 보안전문기업이 **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원격**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**보안 기능 전반을 제공***

* SECurity as a Service(SECaaS)

- **(원격 서버점검)** 서버 보안 관리에 예산·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**원격 서버점검 서비스** 제공('22~'23년 600개)

4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

4-1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확대

◇ 중소기업 기술거래는 **대기업-중소기업간 기술자료 제공**, **제조 노하우 이전** 등이 소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**임치기술 거래활성화가 필수적**

◇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**비밀로 관리되는 임치기술의 거래활성화**를 위해 **새로운 DB구축**, **전문중개기관 발굴** 등 새로운 접근 필요

□ 現 **임치 전담기관의 기술거래기관 지정 · 육성 추진**(중기부, 산업부)

○ **(거래기관 지정)**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*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·중개를 할 수 있도록 **기술거래기관 지정 추진**('22)

* 기술거래기관 요건 상 변호사 등 기술거래사 3명이상 보유 임치기관 대상

○ **(중개수수료 지원)** 중소기업 기술거래 중개자의 수익성 제고위해 **임치기술 이전시 중개수수료 지원**('23~)

* 임치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낮아(신탁 중소기업 기술거래 평균 단가인 2500만원 이하로 예상됨) 비율제 수수료 적용시 수익성이 낮음 → 기술거래 성사시 일정액 지원

○ **(기술거래 플랫폼)**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거래를 위한 **임치기술 DB화*** 및 **기존 기술거래 플랫폼**** **연계**

* 임치기업의 80%가 중소기업 R&D인 만큼 SMTECH과 연계하여 DB구축

** 테크브리지(중기부), 미래기술마당(과기부), NTB(산업부), IP-Market 및 아이디어로(특허청) 등

<임치기술 DB 대상 및 수요처>

임치기술 DB 대상
기술임치 중소기업 (연 1만여건)

임치기술 DB 수요처	
대기업 등(352)	-동반성장평가 대기업 217개사, 공공기관 135개사 등 352개사
연구기관(290)	-기술이전 전담조직 보유 공공연구기관
기술거래 플랫폼	-테크브리지, NTB, IP-Market 등
기술거래기관(133)	-133개 기관 (민간 97, 공공 36)

□ **임치기술 맞춤형 기술거래 기반 구축**(중기부)

○ **(공급DB 확대)** 공급기술 DB를 특허·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,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2-Track 모델 구축('23~)

<공급기술 DB의 Two Track 모델>

구분	내용
Track-1	타기업에 기술이전 하기 위해 신탁된 **특허·실용신안 DB**
Track-2	타기업에 기술이전 하기 위해 정보협약을 통해 제공된 **영업비밀, 기술자료, 아이디어, 연개개발제안서 등 노하우의 DB**

○ **(임치기술 사업화 비용 지원)** 거래된 **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** 국내 민간은행으로부터 **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경비지원 검토**

-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술평가(TCB) 역량으로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평가한 경우, 대출금액의 1.0% 이내에서 이자비용 등 지원

* (지원예시) 임치기업 평균 대출규모 2억원, 지원이자율 1.0% 가정 시,
→ 2백만원/기업당 × 50개사 = 100백만원

○ **(법무지원단 개편)** 중소기업의 임치기술 거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**법무지원단의 지원범위를 임치기술 거래까지 확대**

* (기존) 지원범위 : 기술보호 법무지원/ 전문위원 자격 : 변호사, 변리사
(확대) 지원범위 : 임치기술 거래·중개/ 전문위원 자격 : 기술거래사

□ **기술자료 임치제도 실효성 제고 및 편의 확대**(중기부)

○ **(아이디어 보호 강화)** 창업·벤처기업이 **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**에서 **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 연장**('22년말→'23년말)

- **공모전에 제출예정인 사업계획서**(아이디어) 및 계약 前 거래예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보고서 등의 **신규 임치 수수료 지원**

*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('20.10~) : (창업기업) 무료, (벤처기업) 5만원

○ **(多건임치 바우처)** 多건임치 기업에 기술임치 무료 계약 바우처를 지급하여 **임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** 및 **지속적인 제도활용 유도**

* 전년도말 기준 일반임치 계약을 5건 이상 유지중인 기업에게 1년간 1건 무료지원

○ **(최신본 무료임치)**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자료 최신본의 **온라인 추가임치 비용 지원** 및 **갱신률 제고 추진**

* 업데이트된 기술자료·영업비밀에 대해 연1회 추가비용(5만원)을 무료로 지원

○ **(전자인증 수단확대)** 온라인임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·조달용 간편인증서 등 기업인증 및 **전자서명 수단 확대** 추진

* 현재 개인·법인이 온라인 임치계약시 공동인증서를 사용 중이며, 민간기업에서 발급하는 간편인증서는 개인을 대상으로만 발급 가능

□ 대 · 중소기업간 임치기술 구매상담회 추진(중기부)

○ 임치기술 구매, 기술협력 및 공동기술개발(R&D)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회*를 개최하고 **대·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지원**('22)

* (프로그램) 대중소기업간 1:1매칭, 혁신기술 제품 전시회, 중소기업 컨설팅존, 대기업·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설명회 등

□ 지방청 연계 사통팔달(四通八達) 기술거래지원단 신설(중기부)

○ **(지원체계) 지방청 기술보호 책임관**을 중심으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관리·지원하는 거점형 **기술거래지원단 신설**('23~)

- 지방청과 기술보호 전담기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**창조경제혁신센터·테크노파크·민간전문가**가 실무를 담당

* 지방청 현황(13개) : 서울, 부산, 대구/경북, 광주/전남, 경기, 인천, 대전/세종, 충남, 울산, 강원, 충북, 전북, 경남

사례	◈ '충북창조경제센터 특허개방' 사업(충북창조경제센터, 충북TP, 충북청) - △전문가 상담 창구, △ 충북창조경제센터와 충북TP 기업 네트워크 공유, △법무지원(계약서 작성, 컨설팅 등) △투자상담(TIPS, 엑셀러레이터 연계 등)

○ **(운영관리)** 지방청 관할 기술거래 사례, 협업사항 등을 수집·공유하고, 정책협의(정기)를 통해 **기술거래지원단** 운영('2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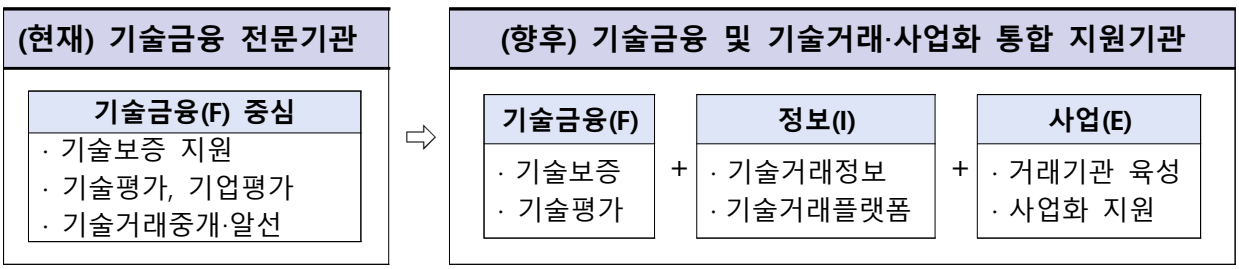
4-2 경제성 · 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

□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전담지원기관 출범(중기부)

○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**기술거래 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 확대***('22)

- (기존)기술금융지원 + (강화)**거래기관 육성, 기술거래 플랫폼 제공** 등

< 기술거래·사업화 관련 기술보증기금 기능·역할 확대(안) >



○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및 기술보호 업무의 통합 지원을 위해 향후 3단계에 걸쳐 조직개편 및 역할확대('22~)

< 기술보증기금 「기술거래 및 사업화」 조직·역할 확대(안) >

구분	현재 ('21)	1단계 ('22~)	2단계('24~)
조직	기술거래보호부	기술거래보호추진단	기술거래보호본부
역할	• 기술거래·보호+금융	• 기술거래사업화 전담	• 기술거래·보호+금융+기술거래사업화

□ 안전한 기술거래 계약을 위한 「공정 미팅룸」 조성(중기부)

○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기술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**기술보증기금 내 「공정 기술거래 미팅룸」 신설**('22~)

* 8개 기술혁신센터 중 일부 시범운영('22) → 8개혁신센터('23) → 61개영업점('24~)

- **(시스템 연계) '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*(TTRS)' 기능 고도화**를 통해 미팅룸내 공개된 기술거래 정보의 자동등록 연계 ('23~)

* 중소기업의 사업제안, 입찰·공모 등 기술거래 기록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(기보)

○ **메타버스 기술**을 활용한 **「비대면 공정 기술거래 미팅룸」 구축**('24~)

□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(중기부)

○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상용화 간극(도입기술↔최종제품) 해소를 위한 **기술거래 후 사업화 촉진 사업(47.6억원) 신설***('22)

※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세부사항

- **(거래기반조성)** 공급-중개-수요 등 기술거래 전단계의 인프라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마련하여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니즈 지원
- **(사업화통합지원)** 중소기업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상용화 간극을 해소하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용화기획-상용화 단계별 비용지원 등 지원

○ 임치기술 거래지원 지원사업 신설, 중소기업기술 거래기관 선정·육성 등 **중소기업 기술거래 전반으로 사업화 촉진 확산 검토**('23~)

* 중소기업기술 임치기관의 기술거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검토('23~)

□ 상생협력 기술거래(2Win-Bridge*) 시장 활성화(중기부)

* 중소기업의 동등한 기술거래지위 확보 및 대기업의 기술탈취의 오해방지를 위하여 기술을 기보에 신탁하여 거래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형 **신탁기술 거래시스템**

<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개요 >



○ **(거래대상확대)** 현재의 **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**을 **전체 기업으로 확대***하여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 확대('22~)

* (현재) 대↔중소기업 → (향후) 대·**중견·중소**↔중소기업, 범용성 확대

○ **(동반성장지수)** 대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대기업 **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중기 신탁기술 도입실적을 반영**토록 제도 개선 검토('22~)

○ **(협력모델확대)** 신탁기술의 단순한 이전외, 거래주체가 상호 동반성장 가능토록 협업모델 지속 확대(2Win-Bridge+)

* 신탁거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M&A, 공동R&D, 판로개척 등

□ 기술거래과정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강화(중기부)

○ 기술거래 희망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술거래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**무료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개선***

* 기술보호 현장자문(3일) 내 '기술거래' 자문분야를 신설하고, 기술거래 계약 시 법무지원단을 통해 심층 컨설팅 지원(30시간) 하도록 개편

○ 중소기업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**기술임치·거래기록 등록시스템·보안시스템 구축** 등 **기술보호 지원사업 확대** 추진

* 기술자료임치('21.4월 누적, 79,048건)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('21, 50개社) 등

□ 공정 기술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기술거래지침 보급(중기부)

○ 기술거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거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**표준계약서** 및 **기술거래지침*** **제정·보급**('22)

* 거래 교섭 및 거래과정 시 유의사항, 비밀유지계약서·표준계약서 등의 활용법 등

< 표준계약서 및 기술거래지침 >

구분	내용
표준계약서	-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 기술거래 ·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
기술거래 지침	-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알선·중개·교섭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지침 제정·보급

Ⅴ. 추진일정

추진 과제	부처	일정
1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		
1. 기술분쟁 관련 입증책임 및 직·간접 비용 부담 해소		
기술침해 분쟁해결+(플러스) 프로그램 도입	중기부	'22~
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 추진	중기부	'22~
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	중기부	'22~
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구축	중기부	'23~
법무지원단 전문성 제고 및 홍보	중기부	'23~
특허청 특사경 수사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 신속 구제	중기부, 특허청	'22~
2.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거버넌스 정비		
상생협력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역량 확보	중기부	'22~
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 의무화 기반 구축	중기부, 공정위	'22~
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 사각지대 해소	중기부, 산업부, 공정위, 특허청, 수사기관	'22~
기술분쟁 및 수·위탁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	중기부, 특허청	'23~
'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' 전문성 강화	중기부	'22~
지방청(기술보호지원반)-인터넷진흥원(지역정보보호센터) 협업 추진	중기부, 과기부	'22~
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포상제 도입	중기부	'24~
2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·공정성·전문성 확보		
1. 법원·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조정 강화		
조정연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지원	중기부, 법원, 검찰청	'24~
조정이유서 작성 지원제도 도입	중기부	'23~
조정·중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근성·편의성 제고	중기부	'23~
조정위원회 사무기구, 상임조정위원제도 등 신설로 분쟁해결 역할 강화	중기부	'22~
2. 조정위원회를 통한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		
'조정위원회'에 행정조사 심의·의결 기능부여로 공정성·전문성 제고	중기부	'22~
기술침해·유출 신고 대응 체계 및 행정조사 전문성 강화	중기부	'22~
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술 판단 문제 해결	중기부, 특허청	'22~
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시효 도입	중기부	'22~
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전자신고 도입	중기부	'22~

3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 · 육성

1. 인증 · 맞춤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

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 도입	중기부	'22~
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 확대 및 강화	중기부, 과기부	'22~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	중기부	'23~
대·중소기업 간 기술보호 상생협력 체계 구축	중기부	'22~

2.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 마련

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	중기부	'22~
중소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	특허청	'22~
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국 특허분쟁 정보제공	특허청	'22~
국내 및 해외 분쟁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	특허청	'22~
사이버 기술참해 예방을 위한 中企맞춤형 보안기술 개발	중기부	'22~
중소기업 랜섬웨어 대응 역량 강화	과기부	'22~

4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

1.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한 임치기관 기능확대

現 임치 전담기관의 기술거래기관 지정·육성 추진	중기부	'22~
임치기술 맞춤형 기술거래 기반 구축	중기부	'23~
기술자료 임치제도 실효성 제고 및 편의 확대	중기부	'22~
대·중소기업 간 임치기술 구매상담회 추진	중기부	'22~
지방청 연계 사통팔달(四通八達) 기술거래지원단 신설	중기부	'23~

2. 경제성 · 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

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전담지원기관 출범	중기부	'22~
안전한 기술거래 계약을 위한 「공정 미팅룸」 조성	중기부	'22~
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	중기부	'22~
상생협력 기술거래(2Win-Bridge) 시장 활성화	중기부	'22~
기술거래과정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강화	중기부	'22~
공정 기술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기술거래지침 보급	중기부	'22~